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480호, 2023. 5. 23., 일부개정]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1로 한다.** <개정 2017. 9. 19.>

② 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 9.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 11. 29., 일부개정]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1. 11. 29.>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1 이상 66 미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29.>

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

구분 소음영향도 [LdendB(A)]	소음대책지역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대상 시설	79 이상	70 이상 79 미만	61 이상 70 미만
주거용 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 건으로 증축·개 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 으로 신축 및 증축 ·개축 허가
교육 및 의료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 건으로 증축·개 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 으로 신축 및 증축 ·개축 허가
공공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 건으로 증축·개 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 으로 신축 및 증축 ·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비 고

1.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만 해당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시설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예정인 토지(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주거용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용 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1. 29.>

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

구 분	구 역	소음영향도 [Lden _{dB(A)}]	용 도 제 한 지 역
소 음 대 책 지 역	제1종	79 이상	1. 완충 녹지지역(이륙·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
	제2종	75 이상 79 미만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제3종	61 이상 75 미만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비 고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